

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표준 음량기준 준수 안내문

1 │ 표준 음량기준 근거 및 개요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방송법 제70조의2(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의 음량기준 등)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(권한의 위임·위탁)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한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표준 음량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.
- 이에, 표준 음량기준 준수사항과 주요 위반사례·문의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확인하시고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 │ 표준 음량기준 준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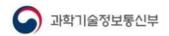
- 가. 표준 음량기준: -24 LKFS, 허용오차 ±2(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)
- 나. 적용 대상 :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 내용물(방송광고 포함)
 - ※ 클래식, 국악 등 전문 음악프로그램을 생방송으로 제공하는 경우 적용 제외
- 다. 음량 측정관리 : 모든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송신 시마다 음량을 측정하고 기록·관리하고 기록한 날로부터 **90일 동안 보존**
 - ※ 담당공무원이 음량 측정자료 제출 요구시 서면 또는 파일로 제출
- 라. 음량 측정지점 : 최종 송출 인코더 전단 또는 후단부
- 마. 음량 측정방법 : ITU-R BS. 1770-3(Algorithms to measure audio programme

loudness and true-peak audio level, 2012) 표준 적용

※ 표준 음량기준 위반 시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시정 지시

근 거	위반 정도	과태료 부과금액
O 방송법 시행령 제69조(과태료의 부과)의 별표4(과태료의 부과기준) 제2호 "타"	1. 동일 채널의 음량기준 위반횟수 1회 시	자체시정 지시
	2. 동일 채널의 위반횟수 2회시(1차 과태료)	기준금액(700만원)
	3. 동일 채널의 위반횟수 3회시(2차 과태료)	직전 부과금액의 50% 가산
	4. 동일 채널의 위반횟수 4회 이상 시	기준금액의 100% 가산
	5.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 납부	기준금액의 20% 감경
	6. 최초 위반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동일한 채널에서 위반행위가 재 발생한 경우	자체시정 지시

^{*} 과태료 부과금액 산정을 위한 위반횟수는 동일 채널의 위반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시정명령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한다.



3 │ 표준음량기준 위반사례

□ 의도적인 음량기준 위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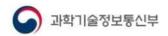
- A 사업자는 당시 방영중이던 인기드라마「○○」제작진의 요청에 따라 실시간 유량조절장비를 OFF하고 방송을 송출
- 사실적인 표현과 연출효과의 극대화를 이유로 음량조절장비를 OFF한 결과 -20 I-LKFS로 표준 음량기준 위반('20년 11월 시정조치)
- ➤ 음량조절장비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본 방송프로그램이 표준 음량기준을 준수하도록 적절한 음향믹싱이 필요함

□ 실시간 음량조절에만 의존한 경우

- o C 사업자는 방송편성에서 다수의 재활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실시간 음량조절장비를 이용해 음량을 조절
- 그러나 프로그램의 음량 특성에 따라 의도대로 음량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음량기준 위반('21년 5월 시정조치)
- ※ D 사업자의 경우 C와 유사하게 실시간 장비를 이용해 음량을 조절
 - 대규모 인사이동 과정에서 장비의 설정값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방송 송출하며 음량기준 위반('20년 11월 시정조치)
- ▶ 본 방송프로그램이 음량기준을 충족하도록 음향믹성이 필요하며 주기적으로장비 설정 및 방영된 프로그램의 평균음량을 확인해야 함

□ 의도하지 않은 예비방송신호 송출

- o B 사업자는 주·예비 두 개의 방송신호를 운용하면서 주방송신호에만 음량조절장비를 적용
- 사업자에서 시청자로 방송신호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예비 방송신호가 외부로 송출되어 음량기준 위반('21년 7월 시정조치)
- ▶ 예비 방송신호도 음량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음량조절장비를 구성하거나 사전 음향믹싱을 철저히 해야 함



표준음량기준 관련 문의사항

□ 「방송편성의 단위」의 의미는 무엇인지

- ◆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 (과기부고시 제2018-39호) 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1. (생략)
- 2. "방송프로그램" 이란 **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(방송광고를 포함** 한다. 이하 같다)을 말한다.
- 3. ~ 6. (생략)
- 일반적으로 APC 송출단위를 방송편성의 단위로 생각할 수 있음 ※ 본프로그램, 방송광고, ID, SPOT 등
- 본 프로그램과 사전·사후·중간광고를 묶어서 송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프로그램·광고·ID·SPOT 등을 별도의 방송프로그램으로 고려

□ 서면조사 시 제출자료

- o 서면조사 시 실시간 음량조절장비 설치를 가정하여 방송프로그램 목록, M-LKFS, I-LKFS 측정값을 요청
- **방송프로그램 목록**은 M-LKFS 측정값과 I-LKFS의 대조확인을 위한 0.1초 단위의 방송 스케쥴을 의미(주로 APC 송출편성 자료 요청)
- o M-LKFS는 수정하지 않은 원본 파일 제출(csv 등)
- I-LKFS의 경우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시작·종료시간, 프로그램명, I-LKFS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파일 가능(엑셀 등)
- o 다만, 음량조절장비의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별도의 장비가 없는 경우 본프로그램 원본소재의 평균음량값(I-LKFS)을 제출하여 기준 준수여부를 증명할 수 있음

o 담당부서 :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(담당 : 박승현 주무관, wmagic@korea.kr)

o 주 소 :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,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

o 연 락 처 : Tel) 02-3400-2244 Fax) 02-3400-2289

o 홈페이지 : http://www.crms.go.kr